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비상사태등에대비하기위한해운
및항만기능유지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 2) 협약체결이 저조한 항만운영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해운·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내용 포함 근거 마련(제3조 및 제5조 개정)
-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이관에 따라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나. 「도선법」 하위법령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이관(제15조~제17조 신설, 제22조 개정)

현행 「도선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이관해 1) 국가필수도선사의 자격기준(제15조), 지정절차(제16조), 지정서의 반납(제17조) 조문을 신설하고, 2)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규정을 개정해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업무의 관할 지방청 및 시·도지사에게 대한 위임 근거 마련(제22조)

다. 국가필수도선사 운용상 미비점 개선(제16조 개정)

비상시 원활한 도선지원 및 젊고 유능한 도선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제16조제4항), 비상사태 장기화 시 초과지정 근거 마련(제16조 제6항)

라.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자격기준 완화(별표 1 개정)

현재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은 해당 항만에 등록된 경우로 한정해 협약 체결이 저조하여 비상시 항만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등록범위를 '해당 항만'에서 '해당 권역'으로 확대해 협약체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국가필수선박**”을 “**국가필수선박 및 국가필수도선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을 “**국가필수선박,
항만운영협약 및 국가필수도선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지정,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국가필수도선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처분 또는 도합
3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16조(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같은 조 제2호의 자격 기준의 경우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도선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제3항, 같은 조(중전의 제1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중전의 제17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19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종사명령

5.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

10.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발급

11. 제17조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반납

별표 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자		자격기준 (각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해당 항만에서 보유한 예선이 총 3천마력 이상일 것 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경우 종전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기간은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자의 등록기간에 포함한다. 나. 전용사용 부두를 확보하고 있을 것 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가. 항만 용역업	1)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상시 작업자가 5명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나. 선박연료공급업	1) 해당 권역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한 기간(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연료공급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연료공급선을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자일 것 (부산권역 : 부산, 마산, 인천권역 : 인천, 평택, 대산, 여수권역 : 군산, 목포, 여수, 울산권역 : 울산, 포항, 동해) 2) 보유한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가 200톤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1. <u>국가필수선박</u> 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1. <u>국가필수선박 및 국가필수도선사</u> -----
2. <u>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u>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u>국가필수선박, 항만운영협약 및 국가필수도선사</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 체결</u>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 <u>지정,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필수도선사 지정</u> --
<신설>	<u>제15조(국가필수도선사의 자격기준)</u> <u>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u> 1. <u>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일 것</u> 2. <u>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처분 또는 도합 3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u> <u>제16조(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u>1. 제1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같은 조 제2호의 자격기준의 경우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u> <u>2. 「도선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u> <u>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2조의 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5조(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8조(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략)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손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2.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손실의 경우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제20조(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 -----. ④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 -----. 1.·2.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

현행	개정안
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2. (생략) ⑥ ~ ⑨ (생략) <u>제18조 (생략)</u> <u>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u>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 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 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u>손실보상</u> 5. ~ 8. (생략)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u>제21조 (현행 제18조와 같음)</u> <u>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u>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필수 <u>도선사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 무종사명령</u> 5.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u>에 따른 손실보상</u>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 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10.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발급</u>
<u><신 설></u>	<u>11. 제17조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반납</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제20조</u> (생략)	<u>제23조</u> (현행 제20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71